



China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중국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China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중국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중국세법 등을 2018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중국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I. 총론 1
 - 1. 중국 개황 2
 - 2. 조세체계 6
 - 3. 중국의 세제개혁 7

- II. 조세제도 11
 - 1. 개인소득세 12
 - 2. 기업소득세 18
 - 3. 증치세 22
 - 4. 소비세법 26
 - 5. 이전가격세제 28
 - 6. 국제세수징수관리 32

- III. 세무행정법제 35
 - 1. 세무관리체제 36
 - 2. 세무조사 37
 - 3. 세무행정복의 38
 - 4. 세무행정소송 41

- IV. 기타 43
 - 1. 한·중관계 44
 - 2. 한·중 FTA 45
 - 3. 한·중 조세조약 46
 - 4. 첨부자료 68

총론

I

- 1. 중국 개황 / 2
- 2. 조세체계 / 6
- 3. 중국의 세제개혁 / 7





1 중국 개황

□ 국가 개요

국 명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C.)
면 적	약 960만 km ² (면적 : 세계 제4위, 한반도의 약 44배)
기 후	- 광대한 영토(남북 거리 약 5,500km, 동서거리 약 5,200km)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 - 주로 최남단지역의 열대기후, 서부지역의 건조기후, 동북지역의 한대 기후 등으로 구분 -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수 도	베이징(Beijing)[총 면적 1만 6,411km ² 로 서울(605km ²)의 약 27배]
인 구	13억 9,008만명(2017년 말 기준, 인구수 세계 1위) 도시 8억 1,347만명(58.5%), 농촌 5억 7,661만명(41.5%) * 베이징(2,171만명), 텐진(1,557만명), 상하이(2,418만명), 충칭(3,075만명)
민 족	56개 민족 :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
언 어	한어(표준어 : 보통화)
종 교	5대 종교 :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건 국 일	1949.10.1. * 중국 공산당 창립 : 1921.7.1.
정치체계	- 일당독재 체제로 공산당이 군·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인대, 최고 행정부 국무원, 최고 감찰기구 국가감찰위와 사법기관을 통제 - 2018년 3월 국가감찰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면서 국무원 소속이었던 감찰부가 국가 기관으로 승격하여 초강력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식 출범
국가원수 (실권자)	- 시진핑 : 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공중양군사위원회 주석(2013.3월 취임) - 리커창 : 국무원 총리,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 위원(2013.3월 취임)



□ 경제 동향

GDP	<p>글로벌 금융위기 기점으로 경제성장 속도 둔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말 시진핑 주석의 뉴노멀 공식 언급 이후 115년 7% 이하로 감소, '16년에 26년만에 최저치인 6.7% 기록했다가 '17년 7년 만에 반등(6.9%)
경제성장률	<p>'17년 경제성장률 6.9% 달성, 기대 이상의 호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 지속과 서비스 산업과 내수 회복결과 <p>'18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내외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GDP 6.8% 성장으로 호조세 지속
GDP(명목)	12조 146억 달러(한국의 8배)
1인당 GDP	'17년 1인당 GDP 8,643달러(한국의 28.9% 수준)
수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 전환. 교역액은 4조 629억 달러(11.2% 증가) - '18년 대외 수요 회복세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환경 악화 불가피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1분기 소비 증가율 9.8%로 소폭 하락 : 온라인 판매액 전년비 35.4% 증가, 전체 소비품 매출 총액의 16.1% 차지 - 내수소비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 주거 등 민생 예산 확대 및 주요 수입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 지난해 12월 187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에 이어 올 5월 자동차 수입관세율도 현행 25%에서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투자	'18년 과잉산업 구조조정, 중국정부의 부채상환 등 영향으로 둔화 속 소폭 상승
산업구조	<p>산업 성장의 축, 전통 제조업 → 서비스업,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GDP 비중 : ('10년)43% → ('17년)51.6% - 산업구조 고도화 : 7대 신흥전략산업, 중국제조 2025집중 육성 - e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동력 자동차



□ 중국 주요정책

① “중국판 Industry 4.0”, 중국제조 2025

- “제조 강국”의 꿈을 이룰 중국 국가전략
 - 제조강국을 건설 위한 30년 3단계 전략 추진

1단계(~'25) 제조강국 반열 진입
 2단계(~'35) 제조강국 진영의 중간 수준
 3단계(~'49) 신중국 건국 10주년 시기로 제조강국 실현

-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5대 중점 프로젝트	10대 중점산업
1. 국가 제조 혁신센터 구축	1. 차세대 정보기술
2. 스마트 제조	2.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3. 공업 기반 역량 강화	3. 전략설비
4. 녹색 제조	4. 선진 궤도교통설비
5. 최첨단 장비혁신	5. 항공우주장비
	6.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7. 신소재
	8.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9. 농업기계장비
	10.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② 중국판 마셜플랜, 일대일로

내용	일대(육상) : 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로(해상)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슬로건(5通)	① 정책 소통 ② 인프라 연결 ③ 무역 원활화 ④ 자금 융통 ⑤ 민심 상통
연선국가	총 65개 국 (동아시아 1개국, AESAN 10개국, 서아시아 18개국, 남아시아 8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CIS 7개국, 중동 유럽 16개국)



관련 금융기구	아세안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은행, 실크로드 펀드
중국의 목표 (경제분야)	① 과잉생산 업종의 수출처 확보 ② 경쟁력이 낮은 생산능력 이전, 혁신 추진 ③ 중서부 지역 발전 추진 ④ 위안화 국제화 박차 ⑤ 외화보유고 운용처 다각화 ⑥ 에너지 조달처 다각화



- 중국의 대외 수요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 (대내적) 신규 수요 창출 및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분야의 판로 개척
 - (대외적) 에너지 확보, 미국주도 경제질서 견제,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연내 발족을 통한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 및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 구축
 - * 일대일로 지역 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29% 차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23.9% 규모
 - *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수요는 연 7,300억불로 추정되나, 투자자금은 연 2,360억불 수준(OECD)

2 조세체계

□ 중국세제체계

- 중국 세제관리체제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중앙세,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와 공동징수하는 공동징수 세목으로 나뉨

<중국 중앙·지방정부 세목 분류>

징수자	세목	세율
중앙 정부	관세	0~27%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소비세와 증치세	-
	소비세	1~45% (담배, 술 등 제외)
	지방은행, 외자은행, 비은행 기업 소득세	-
	철도부서, 각 은행 본점, 각 보험회사 등이 집중 납부하는 수입 (영업세, 소득세, 이윤 및 도시 유지건설세를 포함)	-
공동 징수	증치세(중앙 75%, 지방 25%)	6%, 11%, 17%
	자원세(자원 종류에 의해 배분, 대부분 자원세는 지방소득,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 소득)	종량세, 종가세
	기업소득세	25%
지방 정부	도시유지건설세	1%, 5%, 7%
	도시토지사용세	0.6위안~30위안/m ²
	토지건물재산세	소유 : 1.2%, 임대 : 12%
	차량선박세	배기량에 의해 징수
	인지세	0.003~0.1%
	계약세	3~5%
	토지증치세	30~60%
	연초세	20%
	경작지 점유세	각 지역 상황에 따라 5~50위안/m ²
환경보호세	오염물질 유형에 따라 징수	



□ 중국세법 개론

- 세법의 구성
 - 중국세법의 조직은 일반법과 개별법을 분리하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은 우리 세법과 동일
 - 우리나라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세법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으로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 세수징수관리법으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처럼 정교하지 않음

3 — 중국의 세제개혁 —

□ 개정 개인소득세법 (초안)

- 거주자 개념 및 판정기준 수정
- 종합 및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 구축
- 세율구조 최적화 조정
- 기본공제 비용기준 상향
- 특별부가공제 추가
- 지불측 원천징수 및 개인의 자진신고 결합
-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처음 도입

1. 거주자 개념 및 판정기준 수정

유형	기존	개정(초안)
주소가 있는 거주자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변동없음
주소가 없는 거주자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나 중국내 거주기간이 1년 되는 개인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며, 한 과세연도 동안 중국 내 거주기간의 합계가 183일이 되는 개인
비거주자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도 않는 경우(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개인 포함)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한 과세연도 동안 중국내 거주기간의 합계가 183일 미만인 개인



2. 종합 및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 제도 구축

구 개인소득세법		개정 개인소득세법(초안)	
소득 유형	적용 세율	소득 유형	적용 세율
급 여	3%~45% 7단계 누진세율	종합소득	3%~45% 7단계 누진세율 저세율 구간 적용범위 확대 (3%, 10%, 20% 3단계)
노무보수	20% 추가징수 (최고 40%)		
원 고 료	20%		
사 용 료	20%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5%~35% 5단계 누진세율	영업소득	5%~35% 5단계 누진세율
기업·사업체의 도급경영 및 수탁 경영 소득	5%~35% 5단계 누진세율		
이자 및 배당	20%	변동없음	
재산임대소득	20%		
재산양도소득	20%		
우발소득	20%		
기타소득	20%		



종합소득	영업소득	항목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소득 - 노무보수소득 - 원고료소득 - 사용료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 기업·사업체의 도급경영 및 수탁경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및 배당소득 - 재산임대소득 - 재산양도소득 - 우발소득 - 공무원 재정부서가 징수하는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 과세연도에 따라 항목들을 병합하여 개인소득세를 산정 - 비거주자 : 월별 혹은 매회 항목별로 나눠서 개인소득세를 산정 	<p>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에서 “경영소득”으로 병합</p>	<p>변동없음</p>

· 개정 개인소득세법 실시기간

의견수렴 (‘18.6.29.~7.28.)	과도단계 (‘18.10.1.~12.31.)	정식실시 (‘19.1.1~)
<p>중국인민대회 사이트는 <중국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을 공개하여 공중의견을 공개적으로 응모</p>	<p>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사업체의 도급경영 및 수탁경영소득의 경우 수정안 중의 경영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액을 산정 및 납부</p>	<p>개정 개인소득세법 실시</p>

조세제도

Ⅱ

- 1. 개인소득세 / 12
- 2. 기업소득세 / 18
- 3. 증치세 / 22
- 4. 소비세법 / 26
- 5. 이전가격세제 / 28
- 6. 국제세수징수관리 / 32





1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인과 징수범위

1. 납세인의 일반규정

- 중국공민,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 파트너기업의 투자자 및 중국에서 소득을 취득한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 소유자를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인으로 한다.
- 자연인 성질을 구비한 기업을 포함하며 중국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기업의 투자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주민납세인과 비주민납세인

(1) 구분표준

거주지와 거주시간의 두 가지 표준을 적용한다.

- 1) 거주지 표준 : 습관적 거주지
- 2) 시간표준 : “거주 만 1년”은 하나의 납세연도(즉,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내 중국경내에 거주한 지 만 365일이 되는 사람이며 “임시 출국¹⁾”은 중국에 거주한 날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임시출국 : 하나의 납세연도내 1회당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수회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출국을 의미한다.



(2) 주민납세인과 비주민납세인

납세의무인	판정기준	과세대상범위
주민납세인 (무한납세의무)	1. 중국경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 2. 중국경내에 거주지가 없으나 중국경내에 거주한 지 만 1년이 되는 개인	경내소득 경외소득
비주민납세인 (유한납세의무)	1. 중국경내에 주소지가 없으며 또한 거주하지 않는 개인 2. 중국경내에 주소지가 없으며 또한 거주한 지 만 1년 미만인 개인	경내소득

3. 소득 원천지의 확인

다음 소득은 지급지가 중국경내에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중국원천 소득으로 본다.

- (1) 임직, 고용, 계약이행 등으로 인하여 중국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 (2)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경내에서 사용하여 취득한 소득
- (3) 중국경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중국경내에서 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 (4) 각종 특허권의 중국경내 사용에 대하여 취득한 소득
- (5) 중국경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4. 징수범위(11개 항목)

1. 급여, 임금소득

급여, 임금소득은 개인이 임직 혹은 고용되어 취득한 급여, 임금, 보너스, 연말급여, 노동배당금, 보조금 및 임직 혹은 고용받은 해당 기타소득(비독립성)

■ 주의사항

- (1) 비과세소득
 - 1) 독신자녀 보조금
 - 2) 집행공무원의 급여제도 중 기본급여에 포함하지 않은 보조금
 - 3) 어린이 탁아소 보조금
 - 4) 출장비보조 및 식대보조금
- (2) “급여, 임금소득”에 속하는 기타 항목
 - 1) 회사직원이 취득한 기업국유지분의 구매에 사용된 노동배당금
 - 2) 택시경영단위에서 택시기사에게 순수차량도급 혹은 도급방식으로 운영하는 택시기사가 여객 화물을 운송하여 취득한 수입
 - 3)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제보상금, 퇴직인원의 재임직, 기업(직업)연금, 주식매 입선택권의 권리행사 등

2.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1) 범위

- 1)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영업집조를 취득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예) 개인이 복권 대리매출, 택시운영 등
- 2) 정부 해당부문의 비준을 거쳐 학교, 병원, 컨설팅 등 유상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
- 3) 개인사업자는 업주를 납세인으로 한다.

(2)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기업의 생산경영소득은 본 세목을 참조

(3) 개인독자기업, 파트너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본으로 본인, 가족 성원 및 그의 해당 인원에게 지급한 생산경영과 관련이 없는 소비성 지출 및 차량, 주택구매 등 재산성지출은 기업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투자자 개인의 생산경영소득에 기업하여 “개인사업자 생산, 경영소득” 세목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3.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은 개인이 도급경영 혹은 임차경영 및 하도급, 전대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4. 노무보수소득

- (1) 노무보수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각종 “비고용”의 각종 노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 (2) 개인이 겸직하여 취득한 수입은 “노무보수소득”의 과세항목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 열거된 29가지 항목

디자인, 장식, 장치, 도면제작, 화학검사, 측정, 의료, 법률, 회계, 컨설팅, 강연, 뉴스, 방송, 번역, 원고심사, 서화, 조각, 영상, 녹음, 녹화, 연출, 공연, 광고, 전람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기타노무

■ 주의사항

사용인에게서 출장비, 여행비를 받지 않은 영업업적장려금은 “급여, 임금 소득”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5. 원고료소득

원고료 소득은 개인의 작품을 도서, 간행물의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

☞ 도서, 간행물과 관련된 번역, 원료심사, 서화소득

6. 특허권사용료 소득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며 원고료는 포함하지 않음



7.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개인이 채권, 지분을 소유하여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 (1) 면세이자(3가지 항목) : 국채와 지방정부 채권 이자, 국가에서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은행예금이자
- (2) 개인독자기업, 파트너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 가족 및 기타 해당인원에게 지급한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이 없는 소비성지출 및 차량, 주택자금 등 재산성지출은 기업이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항목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 (3) 납세연도내 개인투자자가 그의 투자기업으로부터(개인독자기업, 파트너기업 제외) 차입하여 본 납세연도가 완료될 때까지 상환하지 않았거나 또한 생산경영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가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하여 기업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8. 재산임대소득

재산임대소득은 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재임대하여 취득한 수입은 “재산임대소득”의 징수범위에 속하며 재산 재임대인이 개인소득세를 납부

9. 재산양도소득

재산양도소득은 개인이 유가증권, 지분,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10. 우연소득

☞ 개인이 수상, 당첨, 복권당첨 및 기타 우연/우발성질의 소득

11. 기타소득

□ 세율

개인소득세는 소득항목에 따라 각각 두 종류의 소득세 세율이 있다.

세 율	과세항목	
1. 초과누진세율	7단계 : 급여, 임금소득(3%~45%)	
	5단계 (5%~35%)	개인사업자 생산, 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 ① 경영성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 경우 : 5단계 초과누진세율 ② 경영성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는 경우 : 7단계 초과누진세율
2. 비례세율 20% (8개 세목) (세 가지 세목은 감면하여 징수)	노무보수소득	일회성으로 취득한 노무보수 소득이 20,000원에서 50,000원 30%, 50,000원 이상 40%
	원고료소득	납부세액을 30% 감면 징수
	재산임대소득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10%의 세율로 경감하여 징수

□ 개인소득세 면세

- (1)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부위, 중국인민해방군 군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에서 수여한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방면의 장려금
- (2) 국채이자,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지방정부 채권이자
- (3) 국가의 통일 규정으로 지급한 보조금 및 수당
- (4) 복리후생비, 위로금, 구제(구휼)금



- (5) 보험배상금
- (6) 군인의 전업비, 전역비
- (7) 이직/퇴직급여
- (8)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인원의 소득은 면세
- (9) 중국정부에서 참여한 국제공약 및 체결한 협의 중 규정한 면세소득
- (10) 정부 혹은 조건에 부합되는 기구에서 지급한 정의로운 행위 장려금

2 -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인과 과세대상

기업소득세는 중국 경내의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한 조직이 생산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소득세

1. 납세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한 조직

☞ 납세인은 기업 외에 수입을 취득한 기타 조직도 포함

(1) 주민기업

- 1)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되거나
- 2)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

(2) 비주민기업

-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또한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 경내에 없으나 중국 경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한 경우
- 2) 중국 경내에 기관,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경내의 소득이 있는 기업



2 과세대상

(1) 과세대상 소득(예시)

1. 화물매출수입
2. 노무수입
3. 재산양도수입
4.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5. 이자수입
6. 임대료수입
7. 특허권사용료 수입
8. 자산수증익(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을 포함)
9. 기타수입

(2) 소득 원천의 확인

소득의 형식	소득 원천지
1. 화물 매출 소득	거래활동의 발생지
2. 노무 제공 소득	노무 발생지
3. 재산양도 소득	(1) 부동산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근거하여 확인 (2) 동산양도소득은 동산을 양도한 기업 혹은 기구, 장소소재지에 근거하여 확인 (3) 권익성투자자산(지분 등) 양도소득은 피투자 기업의 소재지에 근거하여 확인
4.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투자 소득	소득을 배당하는 기업의 소재지
5. 이자소득, 임대료 소득, 특허권 사용비 소득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불하는 기업 혹은 기관, 장소 소재지에 따라 확인
6. 기타소득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 부문에서 확인



□ 세율

종 류	세율	적용범위
기본세율	25%	(1) 주민기업 (2) 중국 경내에 기관·장소를 설립하였으며 소득이 본 기관/장소와 관련이 있는 비주민기업
우대세율	20%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
	15%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고신기술(하이테크)기업, 서부 장려유형 산업기업(2014년 10월 1일부터 실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10%	(1) 중국 경내에 기관/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주민기업 (2) 기관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본 기관/장소와 실질적 연관이 없는 비주민기업

□ 비과세 수입과 면세수입

1. 비과세수입 예시

- (1) 재정지출금
- (2) 법에 따라 수급하고 재정관리에 납입하는 행정사업성수금, 정부성기금
- (3) 기타 비과세수입
- (4) 전용 재정성자금의 기업소득세 처리 규정

2. 면세수입 예시

- (1) 국채이자수입
- (2) 조건이 부합되는 주민기업간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권익성 수익
- (3)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단체의 수입
 - ☞ 상기 비영리단체의 수입에는 비영리단체가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포함하지 않음



□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

- (1)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등 권익(지분)성 투자수익금
- (2) 기업소득세 세액
- (3) 세금연체료(연체이자 성격)
- (4) 벌금, 범칙금, 몰수당한 재산 손실
- (5)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
- (6) 찬조지출
 - ☞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과 관계없는 비광고성질의 지출
- (7) 인정받지 못한 준비금 지출
 - ☞ 자산감액손실, 위험준비금 등
- (8) 기업간 지급한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구간에 지급한 임대료 및 특허권사용비 및 비은행기업의 영업기관 사이에 지급한 이자지출
- (9) 수입의 취득과 관계없는 기타지출

□ 세수우대정책

기업소득세법의 세제혜택의 방식은 계산추가공제, 가속상각, 소득감면, 우대세율, 면제, 감세,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

1. 면세 및 감면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소득(면세와 50% 감면)
- (2) 정기감면(3년 면제, 3년 50% 감면징수)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공공기초시설 항목의 투자경영소득은 처음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납세연도로부터 3년 면제, 3년 50% 감면

2. 고신기술기업(하이테크기업)의 세수혜택

- (1)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고신기술기업은 15%의 소득세세율로 징수
- (2) 고신기술기업의 경외소득의 우대정책



3. 가속상각

-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
- 특정시설이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생산액 비례법 - 잔존가액 : 취득가액의 10%이상을 잔존가액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감가상각연한 : 건물·건축물(20년), 비행기·기차·선박·기계·기타 생산설비(10년), 전자설비·열차·선박 이외의 수송수단·공구·가구(5년), 비행기·기차·선박 이외의 운송공구(4년), 전자설비(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방법 : 잔존가치를 설정하지 않은 정액법 - 감가상각연한 :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익기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10년 이상 기간

3

증치세



□ 개념

제품매출, 과세노무제공, 과세행위가 발생한 부가가치액과 화물 수입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거래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유사함



□ 특징

1. 세수 중립성 유지
2. 보편적 징수
3. 세수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간접세)
4. 전단계 세액공제
5. 비례세율
6. 가격외세금 제도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 (1) 재화의 중국 국내판매 또는 재화의 수입 과세노무의 제공 등
 - 재화의 판매 : 유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 수입하는 재화 : 수입 · 통관하는 재화
 - 가공 · 수리용역의 제공 : 대가를 받고 가공 ·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
 - 과세노무 : 가공 · 수리 · 수선 용역 등 공업적 용역을 말하며, 그 외의 용역은 대부분 영업세의 과세대상임

- (2)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영업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증치세와 영업세가 동시에 과세되지는 않음

2. 납세의무자

(1) 증치세 납세의무인

- 제품매출 혹은 가공수리정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무형자산 혹은 부동산 및 수입제품을 매출하는 법인과 개인

(2) 원천징수의무인

- 중국 경외 법인 혹은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행위가 발생하며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를 증치세 원천징수자로 함



납세인	소규모 납세인	일반 납세인
재화생산 혹은 납세노무 제공에 종사하는 납세인 및 재화생산 혹은 과세노무 제공을 위주로 하며, 동시에 화물도매 혹은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인	연간과세매출액이 50만원 이하	연간과세매출액 50만원 초과
재화의 도매 혹은 소매 납세인	연간과세매출액이 80만원 이하	연간과세매출액 80만원 초과
과세행위를 제공하는 납세인	연간과세매출액이 500만원 이하	연간과세매출액 500만원 초과

* 납세인이 제품매출, 가공수리정비노무 제공 및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화물 및 노무매출액과 과세서비스 매출액을 각각 계산하며 각각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인정표준을 적용

□ 세율

세율	적용범위
17%	재화의 매출 혹은 수입, 과세노무제공,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제공
11%	매출 혹은 수입세법에 열거한 5종류 화물
11%	교통운송서비스, 우편서비스, 기초통신서비스, 건축서비스,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부동산 매출, 토지사용권양도
6%	현재서비스업 제공(임대제외), 부가통신 서비스, 금융서비스, 생활서비스, 무형자산매출(토지사용권 양도제외)
영세율	납세인 화물수출, 열거된 과세서비스

- 비례세율을 채용하고 있으며, 기본세율(17%)과 저세율(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
 - 중국의 증치세율은 일반 세율이 17%로 한국의 10%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
 - 다만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3%의 징수율을 적용



-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과세용역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함
 - 매출액을 구분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세율이 다른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고 또한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용역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비과세용역에 대하여 재화나 과세용역에 대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증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법으로 계산함
 - 매출액 : 납세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대가 및 부대비용을 의미
 - 부대비용 : 가격 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속비, 보조금 기금, 자금모집비, 반환이윤, 장려비,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대리수납액, 대리지급액, 포장비, 포장물임대료, 보관비, 품질보증비, 운수하역비 및 기타 각종 성질의 부대비용
 - 매입세액 :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는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증치세액
- 납세자가 지불한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구입한 재화와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증치세 과세항목에 사용하지 않고 비과세항목·면세항목에 사용되거나 단체복리·개인소비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 지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일반납세자 :

$$\begin{aligned}
 \text{당기납부할 세액} &= \text{당기 매출세액} - \text{당기매입세액} \\
 &= \text{당기 매출액} \times \text{적용세율} - \text{당기매입액} \times \text{적용세율}
 \end{aligned}$$

- 소규모납세자 :

$$\text{납부할 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징수율}$$

4 소비세법

□ 개념

- 중국 경내에서 과세소비품의 생산, 위탁가공과 수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 소비세와 증치세의 차이점

- (1) 징수범위
증치세는 일반적으로 면세등으로 규정한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화물(재화)과 서비스에 과세를 하는 것에 비해, 소비세는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
- (2) 가격과의 관계
증치세는 가격외세금, 증 공급가액과 증치세로 구분되어 자산의 원가나 비용을 구성하지 않음
- (3) 납부단계
증치세는 모든 단계마다 증가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나, 소비세는 규정된 단계에서만 과세

□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인의 일반규정

- 중국 경내에서 생산, 위탁가공과 수입조례에 규정한 소비품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

2. 납세의무인의 특수규정

- (1) 담배를 도매유통하는 단위
- (2) 금은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식품을 소매유통하는 단위와 개인



□ 세목과 세율

1. 소비세 세목 (15개 항목)

1. 담배
2. 주류
3. 고급화장품
4. 귀중 장신구 및 진주옥보석
5. 골프공 및 골프용품
6. 고급손목시계
7. 요트
8. 완제품 오일
9. 일회용 나무젓가락
10. 원목마루(바닥재)
11. 소형자동차
12. 오토바이
13. 폭죽, 불꽃
14. 전지(2015년 2월 1일부터 4%)
15. 도료(2015년 2월 1일부터 4%)

2. 세율

- (1) 비례세율 : 대부분의 과세 소비품에 적용되며 1%~56%
- (2) 정액세율 : 3종의 액체 과세소비품에만 적용(맥주, 황주, 완제품오일)
- (3) 백주, 담배 : 정액세율과 비례세율을 결합한 혼합세금계산방법
- (4)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세인이 세율이 같지 않은 둘 이상의 과세소비품을 겸영하고 각각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는 경우
 - 세율이 서로 다른 과세소비품으로 세트를 만들어 매출하는 경우(각기 구분하여 계산하였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

5 - 이전가격세제



국가세무총국 <관련 신고 완벽화와 동기자료 관리 해당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2016년 제42호

□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기관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사례) 자회사가 정상 가격 1,000달러의 제품을 모회사에 800달러에 판매하였다.

그 결과 자회사의 A국 내의 과세소득은 실제보다 200달러만큼 감소한 반면, 모회사의 B국 내 과세소득은 200달러만큼 증가되어, 기업 전체적으로 세부담은 40달러 감소 $[(200 \times 40\%) - (200 \times 20\%)]$ 하고, 고세율국가인 A국의 조세수입은 80달러 감소된다 $[200 \times 40\%]$.

이 경우 A국의 과세기관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격인 800달러를 독립기업간 정상가격인 1,000달러로 조정하여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이 이전가격세제이다.

□ 특징

- ①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은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도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내자기업간에도 적용되나, 주된 적용대상은 외상투자 기업 및 외국기업)
- ② 적용대상 거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대상



- ③ 적용세목의 범위는 기업소득세가 중심이 되나, 증치세·영업세·소비세 및 기타 세목도 대상
- ④ 중국 이전가격세제는 신고조정형 제도
- ⑤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적용대상

- 적용세목의 범위는 기업소득세가 중심이 되나, 증치세·영업세·소비세 및 기타 세목도 대상이 됨
- 거래를 중심으로 보면,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가 이전가격과 세제도의 적용대상(특수관계자에는 내국기업 및 외국기업이 다 포함됨)

□ 이전가격 방법

-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PU)
- ② 재판매가격법(RPM)

$$\text{공평한 거래가격} = \text{비관련측에 재매출하는 가격} \times (1 - \text{비관련회사간 매출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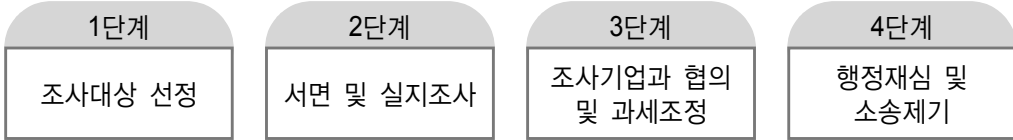
- ③ 원가가산법(CPM)

$$\text{공평한 거래가격} = \text{특수거래의 합리적인 원가} \times (1 + \text{비교가능한 비관련 거래의 원가가산율})$$

- ④ 거래순이익법(TNMN)
- ⑤ 이익분할법(PSM)
- ⑥ 기타 합리적 방법



□ 이전가격조사



• 1단계 : 조사대상 선정

- 이전가격조사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업이 선정됨
- 거래상대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주관세무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업무거래신고표」를 제출해야 함

• 2단계 : 서면 및 실지조사

-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서면조사 함
- 서면조사만으로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지조사에서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조사대상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함

• 3단계 : 조사기업과 협의 및 과세조정

-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거래유형별로 정상가격조정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조정세액이 확정되면 조사담당자는 조정내용(조정통지서)을 서면으로 피조사기업에게 통지하고, 피조사기업은 이전가격과세소득액 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과세조정액을 납부해야 함



• 4단계 : 재심청구와 소송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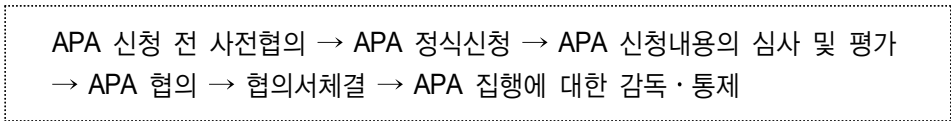
- 피조사기업이 확정된 조정세액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우선 조정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행정재심 신청과 소송제기 가능함
- 세무기관이 세액납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속 상급 세무기관에 재심청구를 해야하며, 재심청구를 받은 상급세무기관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 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제도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의 결정(정상가격산출방법)을 위하여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에 사전약정을 맺어서 이전가격 조사와 분쟁에 대한 우려를 덜고 예측가능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상호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 APA제도는 초기 투입비용이 있으나 세무조사 대응비용보다 저렴하고, 이전가격과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 사업영위가 가능하며, 또한 세무조사와 달리 협의 상대가 중국 국가세무총국 소속 전문가팀이어서 상호 우호적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PA제도의 운용>



- APA제도는 정식신청을 한 후 2~5년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과세 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정식신청서와 관련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통지를 통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음



- APA제도는 자동적으로 갱신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료 90일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계속승인 신청을 하고 동시에 신뢰할 만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일관되게 APA제도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함

6 국제세수징수관리



□ 조세정보 교환

1. 정보교환 유형

- 특별정보교환, 자동정보교환, 자발정보교환, 동기세무검사, 수권대표방문, 업종범위 정보교환 등

2. 조세정보 교환 범위

(1) 국가의 범위

중국과 정식으로 정보교환 조항을 포함한 조세협의를 체결하고 동시에 효력발생 및 집행하는 국가에만 제한

(2) 세목의 범위

소득(과 재산)성질을 구비한 세목

(3) 사람 및 단위의 범위

조세협의 체결국 일방 혹은 쌍방 주민의 정보를 교환

(4) 지역범위

체결국 쌍방이 세수관할권의 지역을 유효하게 행사함



3. 비밀유지기간 : 30년(절대비밀유지급), 20년(기밀급), 10년(비밀급)

4. 소송증거

- (1) 중국이 체약국 주관당국에서 취득한 조세정보는 조세법률집행의 행위 근거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송절차 중 제출할 수 있음
- (2) 세수정보를 소송절차중 증거로 사용할 때 세무기관은 반드시 행정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개정하지 않을 때 공개대질 할 것을 신청 할 수 있음

5. 중국 정보교환은 국가세무총국을 거쳐 진행함

□ FATCA

미국의 FATCA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적으로 미국 부자들의 탈세 행위를 추적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국내법에 속하나 실제 적용범위는 미국을 훨씬 초월함

FATCA는 외국기구에 미국세무기관에 미국계좌 소지인의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외국기구가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외국기구의 미국원천 소득과 수입에 대하여 30%의 징벌성 원천소득세를 공제납부함

미국은 정부간의 합작방식으로 FATCA의 두 가지 협의모델을 실시할 것을 공표함

(형식1)

정부를 통하여 정보교환을 전개하며 호혜적과 비호혜적 두 가지 형식을 포함 (중·미 정부간 협의형식)

(형식2)

금융기구는 직접 미국세무기관에 정보를 보고함



□ 금융계좌 세금관련정보 자동교환 표준

- (1) G20의 취탁을 받아 OECD는 2014년 7월에 <금융계좌 세금관련 정보 자동교환 표준> (AEOI표준이라 간칭)을 발표하여 각국의 국제조세협조를 강화하며 국제탈세를 막기 위하여 강력한 도구를 제공
- (2) 내용 : 두 개 부분으로 구성
 - 1) <관리당국협의 교본> : 호혜형식으로 각국 세무당국 사이에 전개하는 금융계좌 세금관련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문서를 규범화함
 - 2) <통일보고표준> : 금융기관이 외국의 조세주민 개인과 기업계좌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는 해당 요구와 절차를 규정
 - 3) 중국에서의 실시 : AEOI 표준은 2016년 2월에 중국에서 효력이 발생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자산실사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 대외로 비주민금융계좌 세금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시기는 2018년 9월임

세무행정법제

Ⅲ

- 1. 세무관리체제 / 36
- 2. 세무조사 / 37
- 3. 세무행정복의 / 38
- 4. 세무행정소송 / 41





1 세무관리체제



(1) 개념

각급 국가기관 간에 세수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는 것

- 수직적 구분 : 세수에 관한 권리를 중앙과 지방 국가기관에 나누는 것
- 수평적 구분 : 동급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 간에 나누는 것

(2) 세무기구 설치

중앙정부는 국가세무총국(부급), 성 및 성급 이하의 세무기구는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양 계통으로 나뉨

(3) 세무등기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관한 등기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관리를 하는 제도

(4) 장부 및 증빙관리

법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납세자의 진실한 기록 및 경영활동을 보증하고, 관련된 납세의 정보자료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납세자의 위조, 변조, 은닉, 장부 및 기장증빙을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관리법>은 장부 및 증빙의 관리에 대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5) 납세신고

납세자가 법정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법 또는 세무당국이 규정한 기한과 내용에 따라 주관 세무당국에 납세와 관련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률행위



2 세무조사

(1) 개요

세무당국이 국가 세수법률, 법규를 근거로 하여 납세자 등이 납세의무 이행 여부의 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 활동의 총칭

(2) 세무조사의 내용과 형식

- **내용**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의 조사, 납세자가 회계제도를 준수한 상황의 조사, 세무공무원이 세무징수관리제도를 집행한 상황의 조사를 포함. 조사중에 세무당국도 납세자의 생산·경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납세자의 경영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되며, 경제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 **형식** : 납세자의 자가조사, 세무당국의 전문적인 조사, 각 부서의 연합조사 등을 포함

(3) 세무조사 중 세무당국의 권리와 의무

- **세무조사권** : 세무당국이 조사 활동중에 법에 의하여 누리는 권리이며,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행위,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의 감독, 세무 위법 행위의 조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
- **세무조사중 세무당국의 의무** :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직책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은 세무당국에 광범위하고 유효한 조사권리를 부여하였으나 그 권리의 행사를 감독하고 세무당국이 권리 남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은 동시에 일부의 제한 조항을 규정 하였음

3 세무행정복의



(1) 세무행정복의 개념과 특징

- **개념** : 세무행정복의는 당사자(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가 세무당국 및 공무원이 행한 세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법에 따라 상급 세무당국에 신청하고, 복의기관은 심리를 거쳐, 당초처분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유지, 변경, 철회 등의 결정을 하는 활동
- **특징**
 - ① 당사자가 세무당국 및 공무원이 행한 세무의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함
 - ②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세무행정복의를 야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복의의 형식을 통한 구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함
 - ③ 세무행정복의 안건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원래 처리한 세무당국의 상급 세무당국이 진행함
 - ④ 세무행정복의는 행정소송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

(2) 세무행정복의의 적용범위

- 세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세무당국 및 공무원이 세무행정관리활동 중에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특정한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특정한 구체적인 사항이 행한 그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일방 행위로 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1) 세무당국의 세금징수 행위

- ① 세금의 징수
- ② 체납금의 가산 징수



- ③ 감면세와 수출퇴세의 심사 및 비준
- ④ 세무당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탁하여 행한 세금의 원천징수 및 대리징수 행위
- 2)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납세보증금을 제출하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행위
- 3) 세무당국의 세수보전조치
 - 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 통지하여 예금지불을 정지하는 행위
 - ②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 4) 세무당국이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정지한 행위
- 5) 세무당국의 세수 강제집행조치
 - 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 통지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행위
 - ② 압류, 차압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함으로써 세금을 공제하는 행위
- 6) 세무당국이 행한 행정처벌 행위
 - ① 벌금부과(기간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가산 행위 가산금 포함)
 - ② 불법소득의 몰수
 - ③ 수출퇴세권의 정지
 - ④ 세금계산서의 회수 및 발매정지
- 7) 세무기관이 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회답을 하지 않은 행위
- 8) 세무기관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의 자격을 취소한 행위
- 9) 세무기관이 출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저지한 행위
- 10) 세무기관이 행한 기타 행정행위²⁾

2) 세무기관이 행한 모든 구체적 행정행위가 세무행정복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세무기관이 행한 행정행위가 근거한 규정자체에 대해서도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세무행정복의 심리와 결정

- 심리

- 세무행정복의는 서면으로 복의제도를 실행하며, 필요시에 기타 방식을 취하여 복의안건을 심리할 수 있음
- 복의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의신청서 부분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함
- 피신청인은 복의신청서 부분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의기관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관련 자료 또는 증거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해도 답변이 없다면 복의에는 영향이 없음

- 결정

-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한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복의결정을 함
- 자기에게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 7일이내에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기구로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기구는 6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함

(4) 세무행정복의 결정의 집행

복의결정서가 송부되면 법률 효력이 발생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행해야 하나 신청인이 만약 복의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복의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4 세무행정소송

(1) 개념

세무행정소송은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세무당국 및 공무원의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겨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세무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당성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결하는 사법활동

(2) 세무행정소송의 원칙

① 인민법원의 특정사안 주관원칙

인민법원은 세무행정 사건에 대하여 단지 부분관할권만이 있음

② 합법성 심사원칙

세무당국의 권력남용 여부, 세무행정처벌이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었는지의 여부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단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 여부에 대하여만 심사함

③ 화해부적용 원칙

세무행정관리권은 국가권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세무당국은 자의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도 세무행정소송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화해할 수 없음

④ 기소지속집행 원칙

당사자는 기소를 이유로 하여 세무당국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세수보전조치와 세수강제집행조치임

⑤ 세무당국의 증거제출책임 원칙

세무행정행위는 세무당국이 일정한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기 때문에



단지 세무당국만이 가장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증거제출책임을 짐

⑥ 세무당국이 배상을 책임지는 원칙

세무당국 및 공무원이 업무집행이 부당하여 당사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짐

(3) 세무행정소송의 적용범위

세무행정소송의 적용범위는 인민법원이 세무당국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심사권을 소유하는 것이며,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무당국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세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타

IV

- 1. 한·중관계 / 44
- 2. 한·중 FTA / 45
- 3. 한·중 조세조약 / 46
- 4. 첨부자료 / 68



1 한·중관계

수교일 : 1992년 8월 24일

1992~1997	선린 우호 관계
1993. 3월	김영삼 대통령 방중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중관세방지협정·문화협정 체결 등 합의)
1998~2002	협력적 동반자 관계
1998. 11월	김대중 대통령 방중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하나의 중국’재확인)
2000. 6월	한국,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관세율 30%→315%로 인상 중국, 한국산 휴대전화·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
2003~2007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3.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2003년 말	중국,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2005. 11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지 재천명)
2008~201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합의)
2008. 8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체적 추진 방안 합의)
2010년 말	한국, 대중국 수출액 1천억 달러 돌파
2012. 1월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중
2013~2017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2013.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채택,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목표 합의)
2014. 7월	시진핑 주석 방한(‘한·중 공동 성명’채택)
2015. 9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한차원 높은 발전 계기 마련)
2015.12.20.	한중 FTA 공식 발표
2016. 7월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2017. 12월	문재인 대통령 국민 방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



2 한·중 FTA

<추진 경과>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7.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9.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베이징)
2010.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베이징)
2010.5.23.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
2010.5.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9.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베이징)
2011.4.11.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2012.2.24.	한·중 FTA 공청회
2012.3.1.~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2012.3.22.~23.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베이징)
2012.5.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베이징)
2012.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
2014.11.4.~9.	제14차 공식 협상 개최(베이징)
2014.11.10.	한·중 FTA 협상 타결(베이징)
2015.6.1.	한·중 FTA 정식서명(서울)
2015.12.20.	한·중 FTA 공식 발표



3 한·중 조세조약



[1994.9.28.]

1994.3.28. 북경에서 서명

1994.9.28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1994.9.28.]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994.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르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 (1) 개인소득세
 -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형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 사항을 합리적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994.9.28.]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되는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해상·하층토의 자원의 탐사·개발 및 상부 수역의 자원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보유하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에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 (2) 중국의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주자】 [1994.9.28.]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居所,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994.9.28.]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상의 장소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포함하되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에서의 피고용인 또는 여타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을 포함)의 제공을 포함하되 그러한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는 이 항에서 말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1994.9.28.]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 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1994.9.28.]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지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94.9.28.]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994.9.28.]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994.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994.9.28.]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994.9.28.]

1. 일방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계약국에서도 동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이드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 지급원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994.9.28.]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반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994.9.28.]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994.9.28.]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 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994.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94.9.28.]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994.9.28.]

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상의 공공복지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994.9.28.]

1.
 -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조직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게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 조직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994.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사업견습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아래 지급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자신의 생계, 교육, 학습, 연구 또는 훈련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

나. 정부 또는 과학, 교육, 문화, 여타 면세기관이 제공하는 교부금, 장학금 또는 장려금

다.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으로부터 얻는 소득

제21조 【교사 및 연구자】 [1994.9.2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교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교수,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994.9.28.]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4.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 공제에 관한 한 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해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해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제24조 【무차별】 [1994.9.28.]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

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 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994.9.28.]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도출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간적 제약요건에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의견 교환을 위하여 회합을 가질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994.9.28.]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특히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 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9.28.]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994.9.28.]

1. 이 협정은 양국에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
었음을 통보하는 외교공한이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료】 [1994.9.28.]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4 - 첨부자료



- 중국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
- 상해한국인회 (<http://www.kochamsh.com>)
- KOTRA(<http://www.kotra.or.kr>)
- 코참 차이나(중국한국상회) (<http://www.korcham-china.net>)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http://chn.mofa.go.kr>)
- 재정포럼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삼일인포마인
한권으로 끝내는 중국 세법과 상법
- KOTRA
2018 권역별 진출전략(중국)
중국[베이징] 경제동향
- E&Y 한영회계법인 china
2018 중국 개인소득세 개혁
- 한중경영아카데미
중국세법해설
- 한국경제연구원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중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14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제조사관 신호철

국제조사관 김준연

국제조사관 유정욱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의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2018